##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926 발의연월일: 2021. 2. 4.

발 의 자:이성만·기동민·김두관

김진애 · 맹성규 · 박홍근

서영교 · 양정숙 · 이규민

이용빈 · 전혜숙 · 홍성국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역학조사"란 감염병환자등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감염병환자등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등의 활동과 감염병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사례가 발생한 경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그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하는활동을 말함.

그런데, 역학조사의 범위에 역학조사에 필요한 사전 자료조사 등의활동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역학조사의 활동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감염원 추적에 필요한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한 자료조사가 역학조사의 범위에 해당됨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원활한 역학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7호).

법률 제 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7호 중 "활동과"를 "활동(감염원 추적에 필요한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한 자료조사를 포함한다)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6의2. (생 략)	1. ~ 16의2. (현행과 같음)
17. "역학조사"란 감염병환자등	17
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 차	
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감염병환자등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등의 <u>활동과</u> 감염병 예방접	<u>활동(</u> 감염원 추적
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	에 필요한 법인・단체・개인
한 경우나 감염병 여부가 불	등에 대한 자료조사를 포함한
분명하나 그 발병원인을 조	다)과
사할 필요가 있는 사례가 발	
생한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	
기 위하여 하는 활동을 말한	
다.	
18. ~ 20. (생 략)	18. ~ 20. (현행과 같음)